

碩士學位論文

中小企業 經營者特性에 따른 租稅回避에 관한 研究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趙 龍 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中小企業 經營者特性에 따른 租稅回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ax Evasions depending on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ttributes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趙 龍 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中小企業 經營者特性에 따른 租稅回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ax Evasions depending on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ttribute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趙 龍 熙

趙龍熙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 및 세제인지도의 이해	5
1. 중소기업 경영자의 의의	5
2.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	9
3.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18
제 2 절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26
1. 조세회피의 개념	26
2. 조세회피의 유형	32
3. 조세회피와 납세의식	34
제 3 절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5
제 3 장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 조사	42
제 1 절 연구분석의 틀	42
제 2 절 연구 문제	43
제 3 절 측정 변수의 개념 정의 및 구성	44
1. 세제인지도	44
2. 회계투명성 의지	45

3. 경영자 특성	45
4. 납세태도	45
5. 조세회피성향	46
제 4 절 자료 수집 및 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	48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49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회사관련 특성	4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2. 회사관련 특성	50
제 2 절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51
제 3 절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53
제 4 절 경영자 특성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55
1.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55
2.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56
3.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56
제 5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 차이	57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7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7
제 2 절 제언	71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73
【참고문헌】	74
【설 문 지】	79
ABSTRACT	85

표 목 차

<표 2-1> 중소기업의 범위	6
<표 2-2>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과 경쟁력	11
<표 2-3> 경제성장과정과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	13
<표 3-1> 설문문항의 구성	47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4-2> 조사대상자의 회사관련 사항	50
<표 4-3> 세제인지도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	52
<표 4-4> 상관관계 분석	54
<표 4-5>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의지, 경영자특성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55
<표 4-6> 지속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56
<표 4-7>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57
<표 4-8> 세제인지도 수준	58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59
<표 4-10>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60
<표 4-11> 납세태도 수준	61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62
<표 4-13>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63
<표 4-14> 조세회피성향 수준	64
<표 4-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65
<표 4-16>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66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 모형	43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제도의 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나 연구모형의 설정과정을 선행연구 문헌이나 관련 행정기관 자료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가설의 검정과정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행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신뢰와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으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투명기업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기업관을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성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사회적 가치관 즉 사회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책임 의식과 윤리경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국가경영과 재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제신뢰 적정성과 세제의 편의성 및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인식하는 세제에 대한 신뢰와 적정성 등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적정성과 공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세제 유형과 세제 측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세무비리와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조세에 대한 신뢰와 납세기준의 적정성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원관

리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면 먼저, 일부의 전표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회피를 하는 행태가 가장 많으므로 매출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선진화와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납세 의식 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함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조세는 사회공동체 존립상의 필요 불가결한 재원으로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을 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그러나 조세부담자는 조세를 간접적인 급부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인 재산권의 강제이전으로 인식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조세회피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²⁾ 규모가 GDP대비 170조에서 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0-30%에 이르지만 미국,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나타나 세수 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 저해와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조세회피는 지하경제의 일부로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만연되어 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늘어 가고 있는 양상으로 선진국들은 조세회피에 대한 조세 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모가 정확히 파악 되지 않고 있지만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면 지하경제 일부인 조세회피 규모도 작지 않으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조세회피 규모 또한 확대될 것이므로 미흡한 조세 회피에 대한 조세제도가 수립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

2) 지하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불법적 행위(마약, 매춘 등),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감춰진 합법적 행위의 혼합으로 구성됨. 지하경제 행위의 유형인 불법적 행위와 합법적 행위는 크게 화폐거래와 非화폐거래로 구성되며 합법적 행위는 다시 조세 포탈과 조세 회피로 구성됨.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행위는 조세정의와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형식 및 대외적으로 합법화된 적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이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관념을 앞세워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세부담을 되도록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 조세회피란 세금을 최소화하는 행위로, 이는 합법적인 행위보다는 비합법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는 조세순응 또는 성실납세(tax complianc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성실납세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세제도, 경제, 사회, 문화 및 납세자의 납세윤리나 심리적 요인 등 개인의 여건이나 심리적 여건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 제도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갖는 조세회피 요인들은 단순히 외부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식과 납세에 대한 세제인지도, 기업의 이윤발생과 관련하여 기업의 납세를 통해 사회로 환원하려고 하는 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세제도에 개별보상관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의 조세부담감은 없어지지 않으며, 그에 따른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조세회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성향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나 소득의 재분배라는 조세행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고, 성실한 납세자의 소득을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이전시키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세회피성향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인지하는 조세에 대한 세제인지도와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별납세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업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 의식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과 리더십 그리고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운영하고 있는 회사관련 사항에 따라 세제인지도 및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자가 인지한 세제인지도(세제의 공정성, 세제의 편의성, 세제 신뢰 적정성, 세무조사 신뢰), 회계투명성, 리더십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나 연구모형의 설정과정은 선행연구 문헌이나 관련 행정기관 자료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고, 가설의 검정과정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행

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제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참조).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사업세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 및 세제인지도의 이해

1. 중소기업 경영자의 의의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은 나라마다 업종마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규모나 매출액 규모로서 기업을 분류할 때도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는 종업원 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의 양적 기준과 경제 지원정책, 기업의 사업 활동 형태, 생산품의 라이프사이클,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 기준이 이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과 질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질적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적 위주의 정의로 일관하여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과 같이 양적, 질적 기준을 절충한 형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³⁾.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의는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에 의해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적 기준은 동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독

3) 박상범, 『중소기업론』, 삼영사, 1993, p. 22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지정하는 30대 그룹계열사가 아닐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총 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6%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표 2-1>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자산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업종	범위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어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통신 판매업·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경영과 경영의 무한책임, 소규모 조직과 경영, 그리고 주로 지역기업으로의 존재와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경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경영자의 개념

중소기업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주체로서 경영활동

을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영자로서의 일반적 업무 이외에 대기업과는 구분되는 중소기업의 특징적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경영자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대기업의 경영자와는 특성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경영자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업가, 경영진, 경영자 개인에 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가의 개념은 소유자 기업가로서의 개인으로 보고 있다. Say는 기업가를 노동력, 자본 및 토지 등의 생산요소의 결합자이며, 우수한 판단력, 불굴의 정신, 탁월한 계산력 등의 특수한 성격과 능력의 소유자, 감독 및 관리의 기술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정태적 균형 상태에 있는 경제가 동태적 경제로 발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 혁신을 수행하는 동태적 구체가 기업가라고 하였다. 즉, 슈페터에 의하면 정태적인 경제하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그 이익률이 낮아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다른 기업도 진출하게 됨으로써 공급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동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혁신이야말로 기업가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Pinchot(1985)는 기업 내의 개척자와 기업가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 개척자란 개혁과 창의력에 집중하고 조직 환경 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비전과 이상을 이익 있는 사업으로 변환시키는 사람을 말한다⁶⁾.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가는 같은 일을 하지만 조직 외부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⁷⁾.

Drucker(1985)는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가란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은 반드시 수요를 창출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로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들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4) 장균익,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5.

5) Schumpeter, A. Joseph,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6) G. Pinchot, Intrapreneuring: Why You Don't Have to Leave the Corpor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New York: Harper & Row. 1985.

7) 남영호, 『企業家精神이란 무엇인가?』,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4, Vol. 4, pp. 145-166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⁸⁾.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 능력이 종합된 것일 수 있다. 즉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층의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영자가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최종결정자가 권한이 가장 큰 일반적인 기업 속성을 고려할 때 경영자 개인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정의는 기업가와 경영자와의 개념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Drucker(1985)의 견해와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3) 중소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성공요인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경영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경영자의 뛰어난 선견력 및 사업안목, 경영자의 원만한 대인관계, 경영자의 성실성 및 근면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소인 것이다. 대기업은 최고경영층이라는 경영기관이 권한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조직적인 의사결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경영환경에 대한 상황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경영자 1인의 판단과 경영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역할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4) 중소기업 경영자의 역할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대기업에 비하여 소유자의 비중이 높고 전문경영인의 비중이 낮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활동은 대개가 경영자의 동기 또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독단적 정책결정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때

8) P. F.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arper collins. 1985.

우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업을 키우고, 기업이 지니고 있는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철저한 자금관리로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기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고객과 거래처 및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고한 관계정립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2.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조직행태론 차원에서의 연구와 전략경영론 차원에서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⁹⁾. 그런데 전자의 경우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후자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을 습득한 후에 사업을 창업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역량이 매우 높으며, 창업초기에라도 기업경영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창업자의 학력과 경력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은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9)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특성(Characteristics)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유형을 구별하여 주는 성질이나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특성이란 어느 한 경영자를 다른 경영자들과 구별 지어 주는, 불변이거나 혹은 단시일 내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고유의 내적, 외적 성질이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가형 경영자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람과 일의 구분이 없다. 둘째, 집중적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 셋째, 두려움이 없다. 넷째, 활력과 끈기가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¹⁰⁾.

이러한 성격들은 성공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서도 공통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서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고, 대기업의 경영자와 달리 중소기업 경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철저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행하며 이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커다란 신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성공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사업 목적을 위해 편집광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목표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집중적 몰입은 어떠한 난관도 타파할 수 있게 하며,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도 신념과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기업을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며, 지치지 않는 성공에너지로 무장하여 열정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의 주요 동력원으로 경영자 스스로가 작용한다.

오마에 겐이치(Kenichi Ohmae)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높은 윤리관을 지니며, 어느 경우에도 고객제일주의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행하며 끊임없는 호기심과 향상심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앞을 내다보는 힘(先見力), 둘째, 구상하는 힘(構想力), 셋째, 토론하는 힘(討論力), 넷째, 모순에 적응하는 힘(適應力)을 지적하고 있는바¹¹⁾,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과 경쟁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 『히든챔피언』, 2008.

11) 오마에 겐이치(Kenichi Ohmae), 『프로페셔널의 4가지 조건』, 2008.

<표 2-2>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과 경쟁력

McClelland et al.(1961)	중소기업 성공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과 ‘성취동기’임. 성취동기는 자아실현동기와 유사하며,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업성과와 목표는 성취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Stoner et al. (1989)	기업가 정신의 심리적 근원 중에서 성취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이외에 효율적인 경영자는 타인에게 영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력동기가 필요한 것이며 또한 약간의 친애동기도 함께 보유해야만 할 것임.
조임현(1998)	· 중소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내재된 성취동기는 교육을 통해 증가될 수 있음. · 중소기업 경영자가 높은 성취동기를 보유할수록 종업원들을 격려, 고취시켜 높은 수준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음. · 성과지향적인 조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종업원에게 도전적인 과업과 목표를 할당하여야 함.
Mille & Toulouse(1986) Garand & endse(1991)	·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성격이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이 입증.
Homsby & Kuratko(1990) Amba-Pao & Pendse (1985)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기호나 의도에 따라 경영전략 등이 수시로 변함.
Stora(1991)	최고경영자의 심리상태 자기도취형, 소유형, 유혹형에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도 마비조직, 강박조직 등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
d’ Amboise & Bouchard (1990)	최고경영자의 가치관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와 직결된다는 의견.
Kets de Vries & Miller (1984); d’ Amboise & Vemal (1993)	의사결정이나 전략목표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 형성에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취향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이종찬, 이덕로 (2000)	· 한국 중소기업을 지식적, 혁신적, 지원적, 보존적 리더십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 · 높은 집단은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 보임. · 최고경영자가 높은 리더십을 보인 집단은 한 가지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리더 행동이 복합적으로 발휘됨.
박경렬 (2001)	경영자의 유형을 기술가형, 동기부여형, 전략가형으로 구분

출처: 김익성, 한국중소기업의 경영자특성과 경쟁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6.

또한 국가경제의 성장과정에 따라 시대별 주요사건, 경제활동,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4단계의 성장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반형성기, 고도성장기, 전환기 그리고 IMF 이후의 재도약기가 그것이다.

기반형성기는 시기적으로 1955년에서 1972년으로 중소기업은 가내공업형 수준에 있었고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이 정비되던 시기였으며 기업가 정신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1972~1987년)로 대기업은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급성장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수출부진과 수익성이 크게 위축된 시기이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고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전환기(1988~1997년)는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제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시점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대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 부분을 정리하거나 해외이전 시키고 중소기업은 가격과 품질에 대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은 시기이며 국가는 IMF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재도약기(1998~현재)는 IMF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으로 중소기업이 활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¹²⁾.

12) 박주영, 이상호, 박경원, 『중소기업 경영론』, 학현사, 2009, pp. 22-34,

<표 2-3> 경제성장과정과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

구분	주요사건	경제활동	정부정책	경영자특성
기반 형성기 (1955~ 72)	-귀속재산 불하 -해외원조(미국을 비롯한 서구 우방으로부터 원조 수혜)	-본격적인근대화 -생필품, 제조, 건설, 무역업 등에서 성장 기반 다짐 -건설업 급성장 -대기업에 대한 요소투입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적응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본과 노동의 조달에 갈수록 애로를 겪게 됨 -중소기업: 가내공업형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행 -섬유, 신발, 목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활성화 -수출특화 업종을 지정하고 관련 기업육성 -주요 기업인에 정책금융과 외자 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유인 제공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적체계가 처음으로 마련	-한국전쟁 이후 원조경제 체제 성립, 기업집단들이 형성된 시기 -경영자들은 혼란기에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리스크 도전 -자금과 기술의 확보가 성공 창업의 전제로 경영자 특성 중 자원 확보 능력이 중시 -기업가 정신의 태동 단계
고도 성장기 (1972~ 87)	-차관기업부실화 -두 차례 오일 쇼크 -정부와 은행의 과도한 지급 보증 해결을 위한 1972년 8.3사채동결 조치 발동 -현대건설 대립 산업 동아건설 한양 등은 1976년부터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 -월남 폐망으로 자국방역량의 확보가 더욱 절실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발 맞춰 대기업들 양적으로 급성장 -환율의 변화에 따라 국내 경기가 매우 민감하게 변동 -1980년대 중반이후 3저 현상에 따라 경공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수출 증가에 힘입은 일시적인 경기 호황 맞음 -대기업은 성과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 아래 양적인 팽창과 적극적인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은 수출 부진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위축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시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투자 조정과 안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증가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화학, 기계 등 6대 중화학공업을 선정하여 대규모 차입경영과 전방위적인 사업 다각화를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조, 신용보증기금(1976년), 중소기업진흥공단(1979년)을 설립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 시기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안위면되게 하는 밀어붙이는 경영자 특징 -역량 있는 기업가들이 등장하여 기업규모와 사업영역 확대에 치중, 빨리 빨리 경영의 정착 -정부가 비즈니스 위험을 대신 안아줌(taking)으로써 더욱 기업가 정신 고취 -경영자는 공격적이고 리스크 친화적으로 변화되었으나, 그 만큼 정부 의존적 경영자의 양산

전환기 (1988~97)	-민주화 -노동운동활성화 -시장개방 -금융시장 개방 -구조조정 붕괴, 중반 이후 동아시아 개도국이 부상 -1990년대 초 중 국과의 수교 -IMF 구제금융	-세계화 급속하게 진행 -국내 경쟁력의 국경 경쟁의 비중이 높음 -중소기업이 큰 타격 받음 -저임금 의존형 노동 집약적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더욱 퇴보 -1980년대 말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 팽창과 물가 상승, 부동산가격의 폭등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악순환 반복 -대기업들은 경쟁력 떨어진 경공업의 분야 정리, 생산의 해외진출 가속화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여건 변화와 임금 상승 등 가격경쟁력 약화에 직접 노출됨	-1989년에 기술 신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진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여전히 소극적	-대기업들은 경쟁력 떨어진 분야를 해외진출에 이양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여건 변화와 임금 상승 등 가격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노조의 등장 등으로 공격형 경영보다 합리적 경영이 고조되면서 80년대 후반에 정점의 후 기입가 정돈이 시작 -90년대 들어 경영관리의 과학화/조직화 관심도 고조 -경쟁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출규모 응용기술과 국제화에 대한 관심 증가
IMF 이후 재도약기 (1998~현재)	-국내 30대 그룹 중 6개 (기아, 한진, 삼성, 현대)가 잇따라 1999년에 해체	-영미식 경영 방식, 투명경영, 속하게 유입 -첨단 지식기반 산업 등이 신 성장 모멘텀으로 급부상 -정보기술의 발달과 생산의 국제화 -대기업은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역량을 집중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기업은 내수 경기 부양정책의 후유증과 내수 시장 침체로 소비 감소를 경험 -대기업의 수출호조와 중소기업의 활황 연결고리가 느슨해졌고,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의 실적부진	-한글탈태를 통한 위기 극복 -벤처 창업 촉진 -대기업의 수출호조가 중소기업의 활황으로 연결되는 고리 가 매우 느슨해졌고, 내수 침체는 그 대로 중소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벤처육성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상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에 치중 -리스크방어 합리 경영 -마케팅관리(브랜드/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부각 -매출 규모보다 이익에 관심사 (합리 경영)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실험을 하고 있음 나 성공적인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음 -고객만족, 핵심, 융합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에 따른 다양한 경영자 특색

출처: 중소기업연구원(2006),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자특성과 경쟁력에 관한 연구」, 뉴

브리지 연구.

2) 조직행태론 차원에서의 연구

우선 리더십 이론에서의 경영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에 있어서 초창기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 자신에게만 집중되었고, 리더 자신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성공적인 리더십이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서 리더가 구비하여야 할 인간적인 특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의 결론은 특성의 개성변수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었다¹³⁾.

예를 들어 Tead(1935)는 리더가 구비해야 할 특성으로서 지능, 품성, 신념 등의 10가지를 들었고¹⁴⁾, Barnard(1938)은 기술적 측면으로서 체력, 기능등과 정신적 측면으로서 결단력, 지구력 등을 들었다¹⁵⁾. 그러나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리더 특성을 일반화시키는데 실패하였고, 리더의 특성만으로 반드시 효율적인 리더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도 Raven & Rubin(1976)은 많은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일곱 가지의 주요 특성으로 지능, 적응력, 외향성, 지배성, 남성다움, 대인감수성, 보수적 성향이 리더십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Barrow(1977)는 기존의 관련 문헌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재분류한 결과, 리더의 특성으로서 유리한 인성특성, 불리한 이성특성, 신체적 특성, 구조-통제지형, 기술적 전문성, 자기지향, 내향성, 의존지향의 7가지를 추출하였다¹⁶⁾.

리더 특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특성의 추출을 최종 목표로 하기 보다는 리더의 특성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예로서 Anderson & Schneier(1978)는 리더의 통제부위(locus of control)와 리더 및 집단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¹⁷⁾, Mowday(1979)는

13) 고성필, 「환경불확실성, 차별화전략, 분권화 및 최고경영자 특성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2

14) O. Tead., (1935), "The Art of Leadership", New York: McGraw-Hill

15) Barnard (1938),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16) J. Barrow, (1977). "The variables of leadership: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pp. 231-251.

17) C. R. Anderson., & C. E. Schneier, (1978), "Locus of Control, Leader Behavior and Leader

리더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연구에서 성취욕구등 5가지의 리더 특성과 영향력행사에서의 자신감 및 여러 가지 방법의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과의 관련정도를 고찰하였다.

3) 전략 경영론 차원에서의 연구

전략경영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은 객관적·분석적 자료의 보다 체계적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분석적·합리적 사고과정을 강조하면서, 제품수명주기, 시장점유율, 경험곡선, 포트폴리오 행렬 및 산업분석 등과 같은 기술-경제적 요인들을 선호하는 결정론적 관점으로 넘어갔다. 전통적인 상황이론가들도 전략을 환경에의 필요한 반응으로 보는 결정론적 관점을 취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결정론적 전략 경영론은 Cummings(1983), David(1986), Cohen(1988), Hurst, Rush & White(1989) 등 여러 경영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왔다.

이에 따라, 주의론적 관점을 갖는 연구가들은 조직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체적 운영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의 전념 및 명시적 관여가 절대적이라고 논의하면서, 기업의 전략행위는 최고경영자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제는 성공적인 조직성과의 요체인 최고경영자가 전략 및 조직연구의 이론적 형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김병태, 1995).

그러면 전략경영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특성을 연구한 문헌들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고려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Duncan(1972)은 조직의 반응이 인식과정에 의한 강한 영향을 받으며 이는 Tolerance of Ambiguity와 같은 경영자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Hambrick & Mason(1982)은 나이, 기능적 배경, 경력, 교육정도, 재무적 지위, 집단 차이성을, Brockhaus(1980)은 위험선호 경향을, Miller et al(1982), Eastlack & McDonald(1970), Miller(1983)는 통제부위(locus of control)를, Hambrick(1981)은 권력의 정도를, Gupta(1982)는 경험배경, 위험선호 경향, Rothwell(1977)은 인성을, Salancik & Pfeffer(1980)은 소유권을 각각

Performance Among Management Stude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1, pp. 690-698.

경영자의 특성으로 고려하였으며, Wissema et al(1980)은 사회성, 사고방식 등을, Phelps(1980)는 자유, 행복 등에 대한 가치관을 고려하였다.

4) 경영자 특성, 전략 및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

Hansen & Wernerfelt(1989)는 기업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론적 모형과 조직론적 모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훌륭한’ 조직실체는 기업이 좋은 경제적 환경을 선택하거나 무형 자산의 창출을 통하여 상대적 우위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고 논하면서, 조직론적 요인들이 경제론적 요인들보다 기업이익의 변동에 대한 두 배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¹⁸⁾.

조직리더들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가 특히 경영자들의 특성과 전략/성과 간에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¹⁹⁾.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경영자의 특성과 전략적 성향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자의 특성과 성과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흔히 경영자의 특성변수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어 왔다. 하나는 성취욕구, 권력욕구, 통제부위, 위험에 대한 태도, 모호성에 대한 관용 등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특성변수를 직접 결정하고 그들과 성과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접근법은 주도권, 정력과 추진력, 자신감, 인내심, 현실주의, 비판에 대한 개방성 등 행위적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 가정환경, 교육, 경험 등 인구 통계적 특성들이 인지능력 및 태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들을 결정하는 것이다²⁰⁾.

18) G.S Hansen & B. Wernerfelt.(1989), "Determinants of Firm Performanc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5), pp. 399-411.

19) A.S. Thomas, R.J. Litschert & K. Ramaswamy.(1991), "The Performance Impact of Strategy-Management Coalignment: An Empirical Examin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7), pp. 509-522.

20) J. A Bantel & S.E Jackson.(1989), "Top Management and innovation in banking: Does the composition of the top team make a differe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 pp. 107-124. Hofer W.R., & Sandberg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후자의 경우, 특히 기업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은 주로 전략경영 문헌들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들은 기능적 배경, 기업경험의 폭, 그리고 업무량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나, 이들 중 기능적 경험과 그의 상이한 사업 환경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전략 연구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²¹⁾.

3.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은 어떠한 조세 시스템에서도 성실납세의 자세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자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부담구조를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접근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조세부담에 대해 형평에 맞게 납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행 적용받고 있는 조세시스템은 납세자로 하여금 불만스러운 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에 대한 불공평은 성실납세행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확대되고 이러한 조세시스템에 불만족은 조세부담자로 하여금 성실납세의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납세기피, 합법적 또는 위법적 방법 등을 동원하여 사적 차원에서 납세형평성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징수권자의 징수방법 이외에도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조세제도에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 pp.5-28. Sandberg, W. R.(1Miller, D. & P. H. Friesen.(1982), "Innovation in Conservative and Entrepreneurial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 pp.3-27.986), New Venture Performance, MA:Lexington.

- 21) M. E. Porter(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Govindarajan, V.(1989), "Implementing Competitive Strategies at the Business Unit Level: Implications of Matching Managers to Strateg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3), pp. 251-269. R. H. Hayes & W. J. Abernathy(1980), "Managing our way to economic decline", *Harvard Business Review*, 58, pp. 67-77. J.L. Kerr & E.F. Jackofsky.(1989), "Aligning Managers with Strategies: Management Development versus Selec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pp. 157-170. R. E Miles & C. C Snow (1978), *Organization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McGraw Hill, New York. T.L. Wheelen & J.D. Hunger.(1992), *Strategic Management and Business Policy*, Reading, MA.: Addison-Wesley.

대한 형평성개념 의식이 성실납세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조세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형평성이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 할 경우 성실납세의식이 낮아지고 나아가서는 성실납세행위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형평성 관련 실증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바 이러한 불만이 성실납세의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들의 세제인지도를 조세제도의 공평성, 세제의 복잡성,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 등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1) 세제의 공평성

과세방법의 종류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납세 후 소득의 분포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공평성을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납세 후 소득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과세형평을 논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²³⁾.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징수 이후 재분배 과정에서도 원래의 부의 순위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 즉, 납세 전이나 납세 후나 납세자간의 상대적 위치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은 동일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의 개념에 맞게끔 적절한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또한 납세 전 이나 납세 후나 납세자간의 상대적 위치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수직적 공평에 비해 수평적 형평은 뒤늦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수직적 형평은 동일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의 개념에 맞게끔 적절한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전

22)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23) S. A. Madeo and L. A. Madeo,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 1981, pp.457-465

통적으로 연구되어온 개념으로 누진세 또는 역진세의 조세구조가 대부분이 수직적 공평에 근거하여 논의되어 왔다²⁴⁾.

이러한 두 가지 형평개념을 독립된 개념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면 이상적인 조세공평시스템을 구상하기가 어렵다. 즉,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수직적 공평에 대한 고려 없이 수평적 공평만을 논하게 되면 특정계층의 이해만을 살리는 계층 간 차별화의 논리로서만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계층 간에 역진세적인 기능만 존재하게 된다.

수평적 형평이 적용되지 않고 수직적 형평만 고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조세불공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함께 고려되어 공평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소득원천, 연령, 부양가족 수, 사회적 위치 등의 수많은 현실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평성과 관련된 연구 중 일부는 성실납세의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또 다른 일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공평한 조세체계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는 납세자의 납세능력과 납세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다고 보았다²⁵⁾.

2) 세법의 복잡성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조세순응에 상반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려는 연구노력은 두 가지 상이한 방향에서 행해졌다. Milliron(1985)은 4가지 차원에서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대상으로서 납세자를 이용하였는데, 주제의 성격(nature of the topic)과 표현량(quantitativeness of the presentation), 법 악용의 취약

24) R. Plonick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pp.283-288 Louis. Kaplow, "Horizontal Equity: Measures in Search of a Principle", *National Tax Journal*, 42-2, 1989, pp.139-154

25) T. Procano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84, pp.619-636

성(vulnerability of the law misuse)과 문단의 용이성(readability of the passage)을 들었다²⁶⁾.

Long과 Swingen(1985)는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대상으로 조세신고서 작성자를 이용하였다. 그들은 세법의 지나친 세밀성과 수적 계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들 대상의 복잡성에 대해 8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또한 Vogel(1974)은 성실납세와 세법의 복잡성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반면에 다른 연구 결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⁸⁾.

3)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법이 아닌 세무양식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정부부과 과세제도하에는 세무신고서 양식의 작성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보다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일반납세자들이 세무양식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작성하여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세무양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된다. 만약 일반납세자들이 세무양식을 작성하기 쉽다고 여겨진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줄어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성실납세를 유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세율의 적정성

한계세율의 성실납세효과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율이 0일 때 모든 소득은 신고 될 것이고, 세율이 100%에 이르면 소득은 신고 되지 않

26) V. C. Milliron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5, pp.794-816

27) S. Long, and J. Swingen. "Tax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Federal Income Tax Complexity : Some Preliminary Findings", Working Papers, Center for Tax Studies, School of Management, Syracuse University, 1985

28) J. Vogel,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4 December 1974, pp.499-513

을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성실납세는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균등세율 구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논리를 채택하고, 성실납세를 기피하고자 하는 유인은 누진세율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높은 한계세율은 성실납세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실증적 연구들도 있다²⁹⁾.

대부분의 실증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납부성실성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세율이 증가한다면 납부세액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여 세율이 증가한 만큼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율과 성실납세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고찰한 연구는 Allingham과 Sandmo(1972)의 연구에서는 가산세가 미신고소득에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세율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³⁰⁾.

그 후 Yitzhaki(1974)는 가산세가 조세를 회피한 금액에 부과되면 조세 회피에 대한 세율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즉, 세율이 증가했을 때 성실납세의 감소와 조세회피의 증가여부는 불확실한 경우는 없고, 세율은 조세회피에 대한 음(-)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Allingham과 Sandmo의 모형에서 가산세가 미신고소득에 부과된다는 가정대신에 실제 소득에서 신고소득을 차감한 후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된다고 가정하였고, 가산세는 세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세율이 증가하면 신고소득도 증가한다고 했다. 또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절대적 위험회피형의 납세자일 경우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나타나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항상 성실납세가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³¹⁾.

29) M. Jackson and S. Jones,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5, pp.7-17

30). M. G. Allingham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p.328-338

31) S. Yitzhaki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201-202

따라서 이들은 세율을 높이면 지하경제활동을 유발한다는 일반적 논의를 쉽게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의 한계는 납세자를 절대적 위험회피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³²⁾.

McCaleb(1976)는 소득신고에 대한 세율의 효과보다는 납부세액에 대한 세율의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가산세가 미신고소득에 부과된다는 Allingham과 Sandmo의 모형을 인용하여 납부세액을 세율(t)과 소득신고(X)를 곱한 것이라고 하였다. 납부세액에 대한 세율변화의 효과는 $(rX)' / r' = X + r(X' / r')$ 이며 X' / r' 는 양(+), 음(-) 또는 영(0)이 된다면 Rx' / R' 역시 양(+), 음(-) 또는 영(0)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증가, 감소 또는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납부세액에 대한 세율의 효과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³³⁾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성실납세도는 감소한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Clotefelter(1983)의 연구는 한계세율과 조세회피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제공한 TCNP(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에서 분류된 소득계층 중 3개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모두 다 한계세율과 세금공제후의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중요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³⁴⁾.

만약 적절한 모델에서 한계세율의 증가가 성실납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하지가 않다. 원가 손익관계에서 세율이 낮아질수록 성실납세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성실납세가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율이 낮아지면 동시에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도 커질 것이므로 세율을 경감하는 효과는 예

32) A. Sandmo, "Income Tax Evasion, Labour Supply, and the Equity-Efficiency Trade-off",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6, December 1981, pp. 265-288

33) T. S. McCaleb, "Tax Evasion and Differential Taxation of Labor and Capital Income", *Public finance*, Vol. 31, No.2, 1976, pp. 287-294

34) Clotefelter, "T. C.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1983, pp. 363-373

측하기 어렵다.

5) 정부지출의 신뢰성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공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부패로 인하여 정부지출에 있어서 그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도 일치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신뢰성에 대한 세제인지도에서는 납세자들이 정부의 지출과 관련하여 세금의 부담측면을 같이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Vogel(1974)은 스웨덴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의미 없는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납세자들이 56%의 동의를 표하였고, 다수의 불필요한 사회개혁에 세금을 사용하였다는데 51.5%의 동의를 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⁵⁾.

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자발적이고 건실한 납세풍토는 세금에 의해서 제공되는 편익에 대해 잘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납세자들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은 성실납세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Song과 Yarbrough(1978)은 응답자들에게 국세청의 능률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응답자들 (60%)은 국세청을 매우 능률적인 조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성실납세와 정부지출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³⁶⁾.

한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등 북 유럽 국가들이 국민들로부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Vogel(1974)연구 이후 행정당국이 ‘세금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5) J. Vogel,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27, No.4, 1974, pp. 449-513.

36) Y. D. Song and Y.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Discrepa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8, 1978, pp. 442-452.

6)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

국세청이 납세자를 세무조사하거나 신고누락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거나 또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통한 당국의 간섭은 성실납세에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요소이다. 그 예로서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의 증가는 성실납세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Strumpel(1969)은 유럽조세구조의 비교연구에서 조세규정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남부 유럽 국가들의 조세부과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성실납세율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³⁷⁾.

또한 Spicer와 Lundstedt(1976)은 미국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은 성실납세의 감소와 불성실납세행위의 수증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³⁸⁾. 이와 반대로 Witte와 Woodbury(1983)은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의 증가는 성실납세를 보다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³⁹⁾.

Minor와 Harry(1982)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된 위험도의 추정치는 단기간에 걸쳐서도 안정적이지 않으며, 납세자의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얻은 경험에 강력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⁴⁰⁾.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확률은 정부의 통제 및 조정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조세정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을수록 성실납세제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조사의 확률과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세무조사의 확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무당국은 행정처분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한 적발확률을 비밀로 유지하

37) B. Strumpel, "The Contribution of Survey Research to Public Finance", in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Finance, A. t. Peacock(ed.) (New York Praeger), 1969, pp.13-38.

38) M. Spicer and S. Lundstedt, "Audit Probabilities and Tax Evasion Dec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 1976, pp.241-245.

39) Witte,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na, 1983.

40) Minor and J. HARRY,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82, pp.190-203.

고 있다. 위반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동시편의(simultaneous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⁴¹⁾.

즉,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세무조사의 빈도와 성실납세의 정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조사의 확률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에 분석상의 문제가 있다 하겠다.

제 2 절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1. 조세회피의 개념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세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상의 순수한 의미를 가진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한정하는 경우와 이를 조세포탈(tax evasion), 즉 탈세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위의 두 가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조세회피를 합법성과 관련시켜 볼 때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광의의 조세회피로 본다.⁴²⁾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동기 중 가장 초기의 단계가 추종(compliance)의 단계라고 한다.⁴³⁾ 추종의 단계를 납세행위와 결부시키면 조세성실성(tax compliance)이라는 개념이 파생되고, 조세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조세회피(tax avoidance)라고 한다.⁴⁴⁾ 미국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조세성실성을 국세청의 개

41) 성실납세행위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데, 동시에 세무조사의 빈도도 성실납세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의 확률을 성실납세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오류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simultaneous bias라 한다.

42) Seligman, E.R.A., *The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ation*, in R. A. Musgrave and C. Shoup(ed),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Richard, D. Irwin, INC., Illinois, 1959.

43) J. Vogel, op.cit., p. 509.

44)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16.

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⁴⁵⁾ 조세성실성비율은 신고 납부된 세금총액을 감사에 의해 수정되어 납부할 세금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며⁴⁶⁾ 비 성실성의 비율은 1에서 조세성실성의 비율을 차감 한 것($1 - \text{조세성실성비율}$)으로 계산되는데 조세성실성의 반대개념으로 절세, 조세회피, 탈세 등이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악의로 은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세포탈은 사기나 은닉과 관계가 있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무시하거나 은닉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⁴⁷⁾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사법상의 선택가능성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바의 경제적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하려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을 교묘히 면하려는 행위를 추구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⁴⁸⁾.

조세회피는 한편으로는 적법성을 떠는 행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과세에서 누락된다는 점에서 비 규범성을 띤다. 즉, 절세는 입법단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영역인 반면 조세회피는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과세영역에 속하지만 법의 결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며 규제 받아야 할 행동이다⁴⁹⁾.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구별해야 할 개념은 절세 행위와 조세포탈(탈세)행위이다. 절세 행위는 합법적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감면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입법단계에서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조세회피는 세법이 규율하고자 한 영역인데 세법에 사용된 개념의 불완전

45) B. R. Jackson and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 Problems, and Prospects ,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6, pp. 125- 165.

46) A. D. Witte & D. F.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 *National Tax Journal* 38, 1985, pp. 1- 13.

47) D. Mccarnet, White Than White Collar Crime : Tax , Fraud Insurance and The Management of Strigma,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 Sep, 1991, p. 325.

48) 이우택·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8, p. 41.

49) 김진황,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성 등으로 인해 생긴 법의 결함(legislative loopholes)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⁵⁰⁾.

과세요건 충족여부는 과세요건 규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요건 규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처음부터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탈세와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세계 각국은 탈세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탈세의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는 그 범위와 한계를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나 절세 행위나 탈세행위와의 관계 및 그 구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절세 행위가 적법이나 위법이나 하는 판단기준 역시 애매하고 각국의 실정법 규정과 의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절세에 관한 규정도 다르다⁵¹⁾.

한편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에는 조세회피행위, 절세행위, 탈세행위, 가장행위 모두를 포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행위는 좁은 의미로 사용됨을 전제하고 조세회피행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절세행위와의 구별

절세행위는 조세법규가 규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감면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소비세 지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든지 조세부과 대상인 소득을 적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느리게 한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⁵²⁾. 그러나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포탈과의 구분은 명백하나 절세와 조세회피의 한계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의 어의에는 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양자는 세법의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구분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절세란 조세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고 입법단계에

50) 이태로·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 : 조세회피의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회, 1985, pp. 16- 17.

51) 이우택·이철재, 앞의 책, pp. 40- 45.

52) Uckmar. V., General Report, Cahier V. LX VIIIa(Tax Avoidance/ Tax Evasion),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1983, p. 20.

서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에 반해 조세회피는 세법에 사용된 개념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입된 법을 악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절세행위란 탈세행위나 조세회피행위와는 달리 여러 가지 조세 특혜규정에 의한 합법적 조세절약으로서 중소기업 경영 차원에서 용인되고 권장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행위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절세 방법이고, 절세 행위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는데 그 차이가 있다.

2) 탈세행위와의 구별

탈세라는 개념은 과세요건의 충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국마다 일치하고 있으나, 탈세의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와 적극적 행위를 탈세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세범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악의, 고의, 조세포탈의도를 필요로 하고, 비의도적인 포탈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의 행정상의 제재에 그치는 수가 많다. 그리하여 납세의무자의 고의에 의해 특정형태의 포탈을 하는 경우에 탈세와 구분하여 조세포탈이라고 하기도 한다⁵³⁾.

우리나라에서 탈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면세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 행위⁵⁴⁾만을 탈세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탈세는 범죄(포탈범)를 구성하는 조세범칙행위인데 반하여 조세회피행위는 그 자체가 누구를 직접 속이는 것이 아니며,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나타나고, 사법상으로도 적법·유효하므로 비판받을 만

53) Uckmar. V., op.cit., pp. 21- 23.

54) 김용대, 「조세 포탈법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 논점, 1992, p. 915.

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형식이 통상 선택되는 법률형식과 다르거나 남용한 결과, 조세부담의 경감·배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조세포탈은 조세회피와 법적인 관점에서는 구분되나 정부의 세입, 조세납부의 소득 그리고 재정자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⁵⁵⁾.

단지 조세포탈행위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조작을 동반하여 위법성을 가지는 것으로 형사벌이라는 엄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조세회피는 그 사실이 민사법적으로는 적법하고 세무계산상 거짓이 없어도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계산이나 행위를 말하며 조세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3) 가장행위와의 구별

가장행위도 이론상은 명백히 조세회피행위와 다르다. 조세회피행위가 행위자의 진실에 의한 것인데 반해, 가장행위는 부진실의 행위이다. 예로 통모허위표시·허위에 의한 주소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세법상 가장행위는 과세 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장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가 은폐된 경우, 은폐된 행위 자체가 과세의 기초가 되는데 반해(독일 1934년 조세조정법 제5조 1항, 1977년 조세기본법 제41조 2항), 조세회피행위는 세법상 무효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효력이 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과세 상에서만 부인되는 것이다⁵⁷⁾. 즉, 조세회피행위는 법형성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⁵⁸⁾. 여기서 법형성이란 매매·교환에 의해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해나감을 말한다.

55) F. J. Her schel, *Tax Evasion and its 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Finance, 33(3), 1978, p. 233.

56) 草川十郎·田代茂, 調査·査察の稅務, 日本稅理士會連合會編集, Oct, 1985, pp. 266- 268.

57) 이태로·이철송, 앞의 책, p. 22.

58) Tipke/ Lang, Steuerrecht, 13. Aufl, Verlag Dr . Otto Schmidt KG, 1991, p. 114.

4) 조세회피, 절세행위 및 탈세행위와 조세범칙행위와의 관계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합법적인 행위에 속하는 조세절약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세회피행위(Steuerumgehung)가 조세범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의 조세범처벌법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극히 좁은 의미의 조세범칙행위가 되는 셈이다⁵⁹⁾.

이 좁은 의미의 조세범칙행위는 다시 일반탈세범칙행위와 조세행정질서범칙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직접적인 국고침해를 초래한 조세범칙행위를 의미하고 후자는 간접적인 국고침해만이 문제되는 조세범칙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조세범을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실질범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므로 결과범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범칙형태로서는 조세포탈범을 들 수 있으며 탈세가 예견되는 행위, 즉 간접적 탈세행위도 광의의 실질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면허주류제조·판매범과 같은 것이다. 형식범은 탈세라는 실질적인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으나 조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정한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해범이라고도 한다.⁶⁰⁾

납세증지 위조·변조범, 장부소각·과기·은닉범, 명령위반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형식범에 관한 규정은 조세범의 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59) 최임수,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 12- 14.

60) 김면규, 『세법총론』, 조세통납사, 1996, p.318.

2. 조세회피의 유형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누락에 의한 조세회피의 비중이 높다. 이는 거액의 탈세가 용이하며 일반 세무조사로는 쉽게 적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가공지출, 가공부채 등의 회계처리 조작에 의한 조세회피의 비중은 낮다.

그 이유는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방법은 상당히 많아서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조세회피유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과세자료의 누락 및 허위신고

과세당국은 대체로 납세자가 과세자료로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세금징수에 매우 중요하나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누락시킴으로써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조세회피수단이다. 예를 들면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면서 면세자나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소득에서 누락시킨다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것을 유상양도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이다.

2) 회계처리의 조작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가공부채를 계상하거나 가공 지출을 계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공지출로 인한 조세회피유형을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로 이는 조사과정에서 사실 확인만으로 비교적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가공지출로 인한 조세회피는 대차대조표상에서 현금 또는 매출채권 등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부채 또는 잉여금의 감소를 수반하며 손익계산서에서는 매

입가격을 과대하게 하여 원가가 가공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원가율의 상승을 가져와 과세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리고 가공부채로 인한 조세회피는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경우로서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증가는 자산요소에서 매출채권이나 받을어음 등의 자산증가를 가져오며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타인자본으로 인한 지급이자 발생하게 되고, 소득율의 감소를 가져와 당연히 과세소득이 감소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조세회피의 한 유형이다⁶¹⁾.

예를 들면, 가공비용과 가공부채를 동시에 계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반제처리 한다거나 또한 차입금 및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가 역시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3) 조세감면혜택의 악용

조세의 감면이란 특정한 조세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감면의 방법으로 비과세·감면 및 면제, 영세율 등에 의하여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조세의 감면에는 세액공제나 면제와 같은 직접감면과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은 간접감면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세감면에 관한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이 감면 받은 법인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감면 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⁶²⁾.

그리고 특정산업에 주어지거나 특정국가에서 제공되는 조세감면혜택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지점이나 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혜택을 거주지의 자회사에서 남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 간에 기술이전비 등을 과소 계상하여 모회사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

61) 황만순, 『창업실무』, 세경자료사, 1995, p. 501.

6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

고 반대로 지점이나 자회사의 감면소득은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재산(재화)의 은폐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재화) 또는 소득을 은폐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조세회피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나 그로부터의 소득을 향유하면서 소득이나 그 자산의 법적 지배권을 면세자나 저소득자에게 형식상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 귀금속, 무기명증권, 예술품(골동품) 등의 형태로 상속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납세자의 해외도피

조세회피를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도 흔한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회피수단은 각국의 세법의 복잡성과 허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가 납세의무의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인지 어떤 상거래의 부수적인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세법의 범위 내에서 세법이 원래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낮추려는 의도 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조세회피와 납세의식

어느 나라 시대이건 조세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은 조세징수의 강제성으로 인해 상존한다. 불만의 중요한 이유는 조세구조가 형평성의 원칙 측면에서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무리 훌륭한 조세제도라 하더라도 모든 납세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조세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⁶³⁾

63) 정종복, 「중소기업 CEO의 윤리경영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이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9.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세제도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우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시스템이 어떤 형태로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납세자들의 이러한 불만은 납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부여되어, 납세자가 스스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낳게 되는 것이다. 조세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이 결여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감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며 그에 따라 각종 조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대중들이 과세구조에 대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 조세회피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나타나며 조세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데 장애요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조세제도를 정착시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올바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제 3 절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납세자가 조세회피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가, 그리고 그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납세자의 태도와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주로 납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실증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송영달과 Yabrough(1978)는 미국의 North Carolina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윤리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납세신고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탈세사실의 적발 확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신생활자나 전·월세 입주자에 비해 기혼자와 주택 자가 소유자들의 납세윤리가 대체적으로 높다. 또한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과 납세윤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감과 무력감,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납세윤리의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⁴⁾.

이종환(1992)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납세자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조사했다. 종속변인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였고, 독립변인은 세율, 세율구조, 적발확률, 가산세율, 재정불공정성이었다. 그는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방향성과 상대적 크기를 밝히고,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이들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정 했다.

연구결과, 모든 납세자에게서 세율과 조세회피행위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누진세제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누진세 제도가 조세회피행위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확률과 조세회피 행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과세자에게서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제도 역시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적발확률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는 가산세보다는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정불공정성과 조세회피행위와의 상관관계는 모든 납세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⁶⁵⁾.

김진황(1993)은 우리나라의 상장 중소기업(207개 업체)과 비상장기업(122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풍토, 납세의식, 과세공평성, 재정공평성, 조세부담률, 제재정도, 행정능력, 세제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가지고 조세회피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수준이 낮을수록

64) Y. D. Song and T. E. Ya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1978, pp. 442- 452.

65)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2, pp. 57- 72.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풍토가 중소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상장기업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능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무당국의 조사 빈도나 세무조사의 엄격성 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조세회피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평성 요인이며, 비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제 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21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이우윤(1996)은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독립변인을 조세특정요인(세법의 복잡성과 조세지식), 조세에 대한 신념과 인식(조세포탈로 인한 기대 혜택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재에 대한 인식, 상대적인 박탈감), 납세자의 인성적 특성(순응성, 책임성, 위험성향, 가치중립성),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납세자의 직업분류(근로소득자와 자유소득자)와 탈세경험 유무라는 조절변수를 첨가했다. 종속변인은 조세포탈 성향 정도였다.

연구결과, 세제의 복잡성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유직업소득자의 납세행동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고, 탈세 경험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제의 복잡성과 조세포탈 성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탈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비해 탈세 경험에 있는 납세자의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적인 요인 중 순응성과 조세포탈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책임성과 조세포탈 성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로 인한 경제적 기대 혜택,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포탈 성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공정성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유소득자의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탈세 유경험 납세자와 탈세 유경험 자유소득자의 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자와 탈세 유경험 납세자

66) 김진환,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의 경우에는 제재와 조세포탈의 성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중 성별은 탈세 유경험 자유직업 소득자에 비해 탈세무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전체적으로 조세포탈 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은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에 비해 탈세 유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조정환(1996)은 국내의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경리 및 회계부서, 자금부 등의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 가능자료 82부를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회피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납세자에만 치우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즉, 중소기업의 법적환경- 과세공평성,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의 상황적 요인- 조세부담감,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납세윤리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중소기업의 법적환경과 상황적 요인이 납세윤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공평성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윤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상황적 요인인 조세부담감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는 모두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연관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논문 연구의 결과로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납세윤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세회피의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67) 이우윤,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6, pp. 114- 159.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업종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민감한 부분인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이므로 측정에 편향(bias)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한 측정대상이 설문지를 완전히 이해한 경우와 이해하지 못한 경우의 편향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⁸⁾.

윤말순(2001)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실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유형)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검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별 조세회피요인 중요도 인식차이에 있어서 기업 경영 형태에 따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행정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자산의 규모에 따라 조세 심리적 요인과 조세회피기대요인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조세 행정적 요인이, 과세표준에 따라 제재요인이, 세무조사경험에 따라 조세 부담적요인, 조세 제도적요인, 제재요인이, 회계 실무담당자 경력에 따라 조세 지식적요인, 사회 문화적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이, 업종에 따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지식적요인, 조세 행정적 요인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요인과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가설에 따른 검정 결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지식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68) 조정환,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1996, pp. 243- 269.

69) 윤말순,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정종복(2009)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이 납세에 대한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성향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변수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경영규범과 태도가 납세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본 결과, 윤리경영 규범과 태도는 세제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의 값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 윤리경영규범과 태도가 높을수록 세제의 공평성 인식과 세무조사의 신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계투명성 의지가 태도가 납세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계 투명성 의지는 세제의 편의성과 세무조사의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의 값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을수록 세제의 편의성과 세무조사의 신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인지도가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세제의 공평성이 납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무조사의 신뢰가 납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의 값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 세제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납세인지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세제의 편의성은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제신뢰 적정성은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의 값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 세제의 편의성과 세제신뢰 적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세회피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납세태도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경영규범과 태도가 높을수록 세제가 공평하고 세무조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인지하며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을수록 세제 편의성과 세무조사를 신뢰하였다. 세제가 공평하고 세무조사를 신뢰할수록 납세태도는

긍정적이나 세제편의와 세제 신뢰 및 걱정하다고 인지할수록 오히려 조세 회피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납세태도는 조세회피성향을 낮추며 특히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70) 정종복, 앞의 논문, pp.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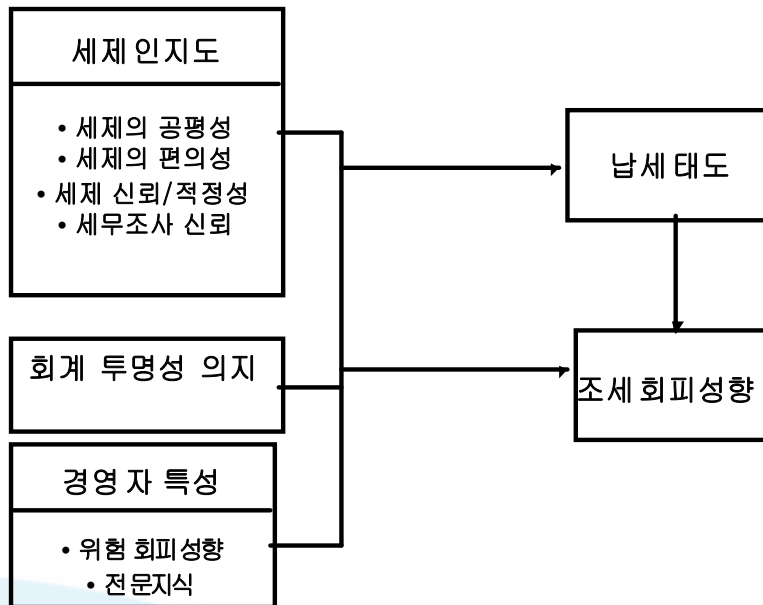
제 3 장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 조사

제 1 절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인지하는 납세에 대한 세제인지도와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과 리더십 그리고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은 어떠한지 파악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관련사항에 따라 세제인지도 및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인지한 세제인지도(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편의성, 세제신뢰 적정성, 세무조사 신뢰), 회계투명성, 리더십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따른 연구모형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그림 3-1]과 같이 설정하고, 이 연구 모형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제 2 절 연구 문제

첫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과 경영자특성 그리고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운영하고 있는 회사관련 사항에 따라 세제인지도 및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자가 인지한 세제인지도(세제의 공정성, 세제의 편의성, 세제신뢰적정성, 세무조사 신뢰), 회계투명성, 경영자특성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제 3 절 측정 변수의 개념 정의 및 구성

1. 세제인지도

1) 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공평성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제의 공평성은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Song & Yarbrough(1978)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세제의 편의성

세제의 편의성에 대해 Milliron(1985)은 주제의 본질, 표현의 계량화, 오용할 가능성, 범위취약성, 문장 이해력을 편의성의 내용으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성은 조세의 납부와 처리에 대한 행정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세제의 신뢰 적정성

세율에 대한 신뢰와 적정성을 현행 세율이 매출금액에 적정하게 결정되어 세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세무조사의 신뢰

세무조사의 신뢰를 현행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세무조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총 4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회계투명성 의지

회계투명성 의지는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회계처리 과정과 기준 및 회계정보의 내용을 충분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정종복(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신고하려는 의지, 회계기준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외부감사인의 정신적/경제적 독립성 보장, 회계투명성을 위한 현대적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수준 등 총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경영자 특성

경영자 특성의 변수는 위험 감수 성향(Amit et al., 1993; Sexton & Bowman, 1985), 마케팅/영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Wooldridge & Floyd, 1990)으로 측정하였다. 즉 연구개발 • 마케팅/영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은 마케팅 및 영업의 영역에서 경영자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로 측정하였고, 경영자 특성 중 위험감수성향을(Amit et al., 1993; Sexton & Bowman, 1985)와 고성필(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위험감수성향은 높은 위험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더 선호, 과감한 행동의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과감한 대처, 남의 지도에 따라가기 보다는 직접 남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음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남세태도

남세태도는 남세 준수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여 Remmers(1960)의 사회적 관행에 대한 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총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조세회피성향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그 결과를 조세입법취지에 합치하지 않은 행위와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납세하기 위한 것을 조세회피라 정의하였다. 정종복(2009)논문을 참고하여 총 1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 구성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문항의 구성

변수		항목	문항수	참고문헌
세제인지도	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공평한 적용 세법구조의 형평에 맞는 구성 업종에 대한 세율의 적정성 조세의 계산근거와 내용 공평	4	Song& Yarbrough (1978), Milliron(1985), 정종복(2009)
	세제의 편의성	조세제도, 세법구조 복잡성 과세정보에 대한 교환용이 행정비용 적절 자동징수체계와 전자세무신고 용이성	5	
	세제신뢰/ 적정성	세율 적정성 세율체계 만족 세법이 공평하게 적용 정부의 세금 공정하게 사용 공정한 혜택	5	
	세무조사 신뢰	세무조사 공정성 조세징수 전략 합리성 조세회피행위 조사 세무조사 받을 확률	4	
납세태도		납세실천, 납세선진국, 단점과 장점, 납세의 기여도 등	6	Remmers(1960)
회계투명성 의지		통제시스템 구축, 신고의지, 설계의지, 독립정보장, 전산시스템도입 등	5	정종복(2009)
경영자 특성		위험과 수익성 선호, 과감한 행동, 과감한 행동, 남을 지도, 경험이나 전문지식	5	(Amit et al., 1993; Sexton & Bowman, 1985)와 고성필(2002)
인구통계학 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세무지식, 업종, 사업기간, 총자산규모, 종업원 규모, 매출액, 소득수준, 사업형태	11	
계			45	

제 4 절 자료 수집 및 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12일에서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70부를 배포하여 21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 응답자 9부를 제외하고 201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WIN(Version 1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회계투명성 의지, 조세회피성향, 경영자 특성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회사관련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회계투명성의지, 경영자특성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회사관련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66.2%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에서는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55.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천만원~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1, 100%)

변 수	집 단	N	%
성별	남	133	66.2
	여	68	33.8
연령	20대	15	7.5
	30대	48	23.9
	40대	66	32.8
	50대	58	28.9
	60대 이상	14	7.0
학력	고졸이하	80	39.8
	대학교 재학	11	5.5
	대졸	91	45.3
	대학원 이상	13	6.5
	기타	6	3.0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모른다	60	29.9
	보통이다	112	55.7
	잘 안다	29	14.4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41	20.4
	1천만원~4천만원 미만	82	40.8
	4천만원~8천만원 미만	56	27.9
	8천만원 이상	22	10.9

2. 회사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회사관련 사항을 보면, 업종은 도·소매 유통업인 경우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서비스업이 20.9%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형태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67.2%로 법인사업자 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기간으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자산 규모는 10억 이하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로는 1-10인인 경우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1억원-3억원 미만인 경우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회사관련 사항 (N=201, 100%)

변 수	집 단	N	%
업종	제조업	39	19.4
	도·소매유통업	47	23.4
	건설업	26	12.9
	서비스업	42	20.9
	음식 숙박업	22	10.9
	기타	25	12.4
사업 형태	법인사업장(비상장)	66	32.8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135	67.2
사업 기간	3년 미만	24	11.9
	3년-5년 미만	39	19.4
	5년-10년 미만	66	32.8
	10년-15년 미만	43	21.4
	15년 이상	29	14.4
총 자산 규모	10억 이하	108	53.7
	10-20억	59	29.4
	20-50억	17	8.5
	50억 이상	17	8.5
종업원 규모	1-10인	139	69.2
	11-50인	58	28.9
	51인 이상	4	2.0
매출액 규모	1억 미만	35	17.4
	1억원-3억원 미만	47	23.4
	3억원-5억원 미만	34	16.9
	5억원-10억 미만	33	16.4
	10억원-30억원 미만	32	15.9
	30억원-50억원 미만	10	5.0
	50억원 이상	10	5.0

제 2 절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⁷¹⁾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항목척도를 사용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분석(item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다. 신뢰성계수는 0.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⁷²⁾

타당성(validity)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타당성 중에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있다.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속성다측정방법 (multitrait-multimethod matrix)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요인추출은 일반적으로 측정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에 구한 요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요인회전은 직각회전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일반적으로 단일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의 경우 0.6 이상이면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71)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2, p.240.

72) Hair, J. F. Jr., R. E. Anderson, R. L. Tatham,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5th ed.

73) 임종원, 『Relationship Marketing과 Relationship Merit』, 『마케팅연구』, 7(1), 1992, pp.173-195.

먼저 세제인지도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세제인지도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

항목	세제인지도 요인			
	세제 신뢰/적정성	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편의성	세무조사 신뢰
VAR00014	.736	.128	.246	-.051
VAR00013	.718	.166	.280	-.009
VAR00011	.615	.376	.299	-.061
VAR00010	.613	.451	.283	-.010
VAR00012	.558	.440	.296	.128
VAR00002	.134	.860	.164	.019
VAR00001	.125	.804	.036	.200
VAR00003	.249	.725	.267	-.080
VAR00004	.263	.675	.225	.099
VAR00008	.115	.082	.820	.210
VAR00009	.046	.157	.764	.227
VAR00006	.220	.168	.706	-.018
VAR00005	.245	.184	.630	-.001
VAR00007	.355	.224	.521	-.128
VAR00017	.119	.117	.062	.843
VAR00018	-.082	-.004	.192	.841
VAR00015	.275	.138	-.041	.713
VAR00016	.113	.091	-.013	.575
Eigen-value	6.718	1.920	1.614	1.358
설명력	37.325	10.668	8.966	7.542
누적설명력	37.325	47.992	56.958	64.500
Cronbach's α	.862	.836	.801	.737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4.500%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1은 세제신뢰 적정성, 요인2는 세제의 공평성, 요인3은 세제의 편의성, 요인4는 세무조사신뢰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분석결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 내적 일관성 정도를 파

악해 보면 모두 0.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 역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절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 투입되는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응답경향인 기술통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0.598(세제의 공평성과 세제신뢰 적정성)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간에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는 자칫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인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데에 오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0.8~0.9이상으로서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인의 응답을 보면 조세회피성향에 대해서는 세제 신뢰 적정성과 세무조사 신뢰, 경영자특성, 납세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무조사 신뢰와 납세태도는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신뢰와 납세태도가 높으면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영자 특성과 세제신뢰 적정성은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상관관계 분석

	세 제 의 공 평 성	세 제 의 편 의 성	세 제 신 퇴 적 정 성	세 무 조 사 신 퇴	회 계 투 명 성 의 지	경 영 자 특 성	납 세 태 도	조 세 회 피 성 향
세 제 의 공 평 성	1							
	201							
세 제 의 편 의 성	.462(**)	1						
	.000							
	201	201						
세 제 신 퇴 적 정 성	.598(**)	.571(**)	1					
	.000	.000						
	201	201	201					
세 무 조 사 신 퇴	.273(**)	.283(**)	.354(**)	1				
	.000	.000	.000					
	201	201	201	201				
회 계 투 명 성 의 지	.169(*)	.293(**)	.190(**)	.114	1			
	.017	.000	.007	.106				
	201	201	201	201	201			
경 영 자 특 성	.024	-.033	.048	-.143(*)	.116	1		
	.738	.646	.498	.043	.101			
	201	201	201	201	201	201		
납 세 태 도	-.047	-.126	-.118	.108	.116	-.040	1	
	.509	.075	.096	.127	.102	.569		
	201	201	201	201	201	201	201	
조 세 회 피 성 향	.038	.134	.168(*)	-.271(**)	-.084	.206(**)	-.349(**)	1
	.594	.058	.017	.000	.233	.003	.000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제 4 절 경영자 특성이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종속변수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 4-5>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의지, 경영자특성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Constant)	3.476	.315		11.020	.000
세제의공평성	.031	.076	.036	.415	.679
세제의편의성	-.149	.081	-.163	-1.843	.067
세제신뢰적정성	-.126	.090	-.136	-1.406	.161
세무조사신뢰	.151	.068	.168	2.225	.027
회계투명성의지	.139	.060	.178	2.305	.022
경영자특성	-.031	.063	-.035	-.500	.618
R ² =.272	F=17.673	p=0.000			

* p<0.05 ** p<0.01 ***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이 납세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27.2%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17.673, p=0.000).

변인 중 세무조사 신뢰와 회계투명성의지가 납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p<0.05),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계수를 파악해 보면, 회계투명성의지($\beta=0.178$) > 세무조사 신뢰가($\beta=0.168$)

순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투명성 의지, 세무조사 신뢰 순으로 납세태도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 4-6> 지속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Constant)	4.446	.384		11.584	.000
납세태도	-.547	.104	-.349	-5.261	.000
R ² =0.349	F=27.673	p=0.000			

* p<0.05 ** p<0.01 *** p<0.001

회귀분석 결과,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4.9%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27.673, p=0.000).

표준화계수를 파악해 보면, 납세태도($\beta = -.349$)로 나타났다.

즉 납세태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 4-7>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Constant)	2.510	.457		5.489	.000
세제의공평성	-.111	.110	-.082	-1.007	.315
세제의편의성	.243	.117	.169	2.067	.040
세제신뢰적정성	.383	.130	.265	2.952	.004
세무조사신뢰	-.492	.099	-.350	-4.998	.000
회계투명성의지	-.195	.088	-.150	-2.221	.027
경영자특성	.232	.091	.168	2.555	.011
$R^2=0.206$	$F=8.406$	$p=0.000$			

* $p<0.05$ ** $p<0.01$ ***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이 조세회피를 설명하는 정도는 20.6%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F=8.406$, $p=.000$)

변인 중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제의 편의성, 세제신뢰 적정성, 세무조사 신뢰,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 변인이었으며,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계수를 파악해 보면, 세무조사 신뢰($\beta = -.350$) > 세제신뢰 적정성($\beta = 0.265$) > 세제의 편의성($\beta = .169$) > 경영자 특성($\beta = .168$) > 회계투명성 의지($\beta = -.1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신뢰와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으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신뢰 적정성과 세제의 편의성 및 경영자 특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조세회피성향 차이

1.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1) 세제인지도 수준

세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세제인지도에 대한 전체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55로 나타나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보면, 세무조사 신뢰가 평균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세제신뢰 적정성이 평균 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세제인지도 수준

변수	N	Mean	Std. Deviation
세제의공평성	201	2.65	.712
세제의편의성	201	2.45	.672
세제신뢰적정성	201	2.35	.666
세무조사신뢰	201	2.77	.684
전체	201	2.55	.51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정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평균 2.84로 세제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인 경우가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1$).

세법 및 세무지식 정도에 따라서는 잘 아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보다 세제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천만원-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성별	남	133	2.52	.515	-1.286
	여	68	2.62	.511	
연령	20대	15	2.76	.577	1.097
	30대	48	2.58	.526	
	40대	66	2.54	.448	
	50대	58	2.54	.569	
	60대 이상	14	2.38	.451	
학력	고졸이하	80	2.45	.513	3.148**
	대학교 재학	11	2.31	.455	
	대졸	91	2.63	.447	
	대학원 이상	13	2.84	.771	
	기타	6	2.64	.595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모른다	60	2.43	.513	3.210**
	보통이다	112	2.59	.453	
	잘 안다	29	2.70	.681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41	2.41	.474	2.176*
	1천만원-4천만원 미만	82	2.62	.601	
	4천만원-8천만원 미만	56	2.61	.446	
	8천만원 이상	22	2.44	.316	

*P<.05, **P<.01, ***P<.001

3)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억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업종	제조업	39	2.53	.380	1.845
	도·소매유통업	47	2.70	.580	
	건설업	26	2.64	.582	
	서비스업	42	2.52	.457	
	음식 숙박업	22	2.46	.427	
	기타	25	2.36	.604	
사업 형태	법인사업장(비상장)	66	2.64	.455	1.576
	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135	2.51	.539	
사업기간	3년 미만	24	2.63	.540	1.399
	3년-5년 미만	39	2.42	.551	
	5년-10년 미만	66	2.61	.517	
	10년-15년 미만	43	2.61	.518	
	15년 이상	29	2.45	.404	
총 자산 규모	10억 이하	108	2.50	.534	3.315*
	10-20억	59	2.51	.459	
	20-50억	17	2.79	.515	
	50억 이상	17	2.81	.462	
종업원 규모	1-10인	139	2.54	.524	.376
	11-50인	58	2.58	.504	
	51인 이상	4	2.73	.349	
매출액 규모	1억 미만	35	2.34	.541	1.980
	1억원-3억원 미만	47	2.52	.551	
	3억원-5억원 미만	34	2.70	.596	
	5억원-10억 미만	33	2.64	.412	
	10억원-30억원 미만	32	2.57	.447	
	30억원-50억원 미만	10	2.74	.302	
	50억원 이상	10	2.44	.447	

*P<.05, **P<.01, ***P<.001

2.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1) 납세태도 수준

납세태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64로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세는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세는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납세태도 수준

항 목	N	M	S. D
1. 납세는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201	3.83	1.017
2. 납세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201	3.65	.876
3. 납세는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201	3.21	.898
4. 납세하지 않아도 나라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201	3.67	.944
5. 납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는다.	201	3.70	.866
6. 납세는 어떠한 명목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201	3.77	.835
전 체	201	3.64	.61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아는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성 별	남	133	3.66	.632	.585
	여	68	3.60	.583	
연 령	20대	15	3.22	.411	2.195*
	30대	48	3.61	.632	
	40대	66	3.67	.523	
	50대	58	3.74	.681	
	60대 이상	14	3.62	.735	
학 력	고졸이하	80	3.66	.605	.753
	대학교 재학	11	3.56	.583	
	대졸	91	3.59	.626	
	대학원 이상	13	3.79	.467	
	기타	6	3.92	.923	
세 법 및 세 무에 관 한 지 식	모른다	60	3.57	.637	2.604*
	보통이다	112	3.72	.628	
	잘 안다	29	3.46	.460	
소 득 수 준	1천만원 미만	41	3.58	.656	.379
	1천만원-4천만원 미만	82	3.66	.678	
	4천만원-8천만원 미만	56	3.61	.523	
	8천만원 이상	22	3.74	.521	

*P<.05, **P<.01, ***P<.001

3)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업종, 사업기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 서비스업인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사업기간에서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기간이 높을수록 납세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3>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업종	제조업	39	3.56	.624	4.334**
	도·소매유통업	47	3.71	.592	
	건설업	26	3.78	.524	
	서비스업	42	3.84	.633	
	음식 숙박업	22	3.57	.447	
	기타	25	3.20	.633	
사업 형태	법인(비상장)	66	3.66	.596	.372
	개인(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135	3.63	.626	
사업 기간	3년 미만	24	3.46	.567	4.358**
	3년-5년 미만	39	3.43	.504	
	5년-10년 미만	66	3.62	.632	
	10년-15년 미만	43	3.72	.622	
	15년 이상	29	3.98	.602	
총 자산 규모	10억 이하	108	3.70	.628	1.241
	10-20억	59	3.61	.625	
	20-50억	17	3.60	.610	
	50억 이상	17	3.40	.464	
종업원 규모	1-10인	139	3.62	.619	.250
	11-50인	58	3.69	.621	
	51인 이상	4	3.63	.417	
매출액 규모	1억 미만	35	3.60	.612	.755
	1억원-3억원 미만	47	3.77	.644	
	3억원-5억원 미만	34	3.56	.652	
	5억원-10억 미만	33	3.54	.602	
	10억원-30억원 미만	32	3.66	.617	
	30억원-50억원 미만	10	3.57	.486	
	50억원 이상	10	3.80	.526	

*P<.05, **P<.01, ***P<.001

3.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1) 조세회피성향 수준

조세회피성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2.45로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일부의 전표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와, 가공부채의 계산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4> 조세회피성향 수준

항 목	N	M	S. D
1. 일부의 전표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67	1.167
2.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수선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55	1.104
3. 매출단가를 낮게 계상 하여 납세 신고액을 줄임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64	1.115
4. 총 거래액 중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한다.	201	2.59	1.226
5.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60	1.105
6. 제조원가(공무원가, 매입원가)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한다.	201	2.47	.980
7. 세무자료나 세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한다.	201	2.44	1.143
8. 회계처리를 허위 조작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37	1.098
9. 조세감면 혜택을 남용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24	1.084
10.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22	1.087
11. 가공부채의 계상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201	2.22	1.087
전 체	201	2.45	.96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고졸이하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법 및 세무지식정도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4천만원-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성별	남	133	2.47	.944	.272
	여	68	2.43	1.005	
연령	20대	15	2.56	1.185	.766
	30대	48	2.49	1.066	
	40대	66	2.48	.810	
	50대	58	2.48	1.012	
	60대 이상	14	2.03	.806	
학력	고졸이하	80	2.60	.937	1.345
	대학교 재학	11	2.55	.913	
	대졸	91	2.40	.987	
	대학원 이상	13	2.00	.905	
	기타	6	2.26	1.032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모른다	60	2.63	.929	1.630
	보통이다	112	2.40	.898	
	잘 안다	29	2.30	1.224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41	2.20	.843	1.664
	1천만원-4천만원 미만	82	2.44	1.045	
	4천만원-8천만원 미만	56	2.63	.974	
	8천만원 이상	22	2.55	.752	

*P<.05, **P<.01, ***P<.001

3)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형태,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형태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법인사업자보다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총 자산 규모에서는 20-50억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억 이하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16>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업종	제조업	39	2.48	.797	1.729
	도·소매유통업	47	2.42	1.053	
	건설업	26	2.18	1.071	
	서비스업	42	2.36	.942	
	음식 숙박업	22	2.95	.820	
	기타	25	2.51	.986	
사업 형태	법인(비상장)	66	2.26	.920	-2.005*
	개인(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135	2.55	.973	
사업기간	3년 미만	24	2.49	.840	1.486
	3년-5년 미만	39	2.32	.840	
	5년-10년 미만	66	2.59	1.028	
	10년-15년 미만	43	2.57	1.017	
	15년 이상	29	2.13	.941	
총 자산 규모	10억 이하	108	2.32	.837	4.058**
	10-20억	59	2.42	.933	
	20-50억	17	3.12	1.095	
	50억 이상	17	2.73	1.371	
종업원 규모	1-10인	139	2.43	.953	.111
	11-50인	58	2.50	.991	
	51인 이상	4	2.52	1.141	
매출액 규모	1억 미만	35	2.36	.992	1.331
	1억원-3억원 미만	47	2.31	.915	
	3억원-5억원 미만	34	2.45	1.019	
	5억원-10억 미만	33	2.71	1.056	
	10억원-30억원 미만	32	2.61	.895	
	30억원-50억원 미만	10	2.68	.844	
	50억원 이상	10	1.94	.741	

*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나라의 세입은 경기부양 명목의 각종 감세조치들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은 291조 8,000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성향을 낮추고 세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나 동기 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은 물론, 조세정책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세수정책의 운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제도의 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나 연구모형의 설정과정을 선행연구 문헌이나 관련 행정기관 자료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가설의 검정과정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행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세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세제인지도에 대한 전체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55로 나타나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보면, 세무조사 신뢰가 5점 만점에 평균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세제신뢰 적정성이 5점 만점에 평균 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세회피성향은 5점 만점에 2.45로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회계투명성의지는 5점 만점 평균 2.91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경영자 특성(리더십)은 5점 만점에 2.97로 보통이하로 나타났고, 납세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변인 중 세무조사 신뢰와 회계투명성 의지가 납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투명성 의지($\beta = 0.178$) > 세무조사 신뢰($\beta = 0.168$) 순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납세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납세태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납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납세태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납세태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납세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과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문화의 형성뿐만 아니라 국고의 재정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넷째, 세제인지도 및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세제의 편의성과, 세제신뢰 적정성, 세무조사 신뢰, 회계투명성 의지, 경영자 특성 변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세무조사 신뢰($\beta = -.350$) > 세제신뢰 적정성($\beta = 0.265$) > 세제의 편의성($\beta = .169$) > 경영자 특성($\beta = .168$) > 회계투명성 의지($\beta = -.150$)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신뢰와 회계투명성 의지가 높으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기업관을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성향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사회적 가치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경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국가경영과 재정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반면에, 세제신뢰 적정성과 세제의 편의성 및 경영자 특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제신뢰 적정성과 세제의 편의성 및 리더십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인식하는 세제에 대한 신뢰와 적정성 등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조세에 대한 신뢰와 납세기준의 적정성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정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세제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법 및 세무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세제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1천만원-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세제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세제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이 보통인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아는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성향에서 납세태도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찍부터 납세의무에 대한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여덟째,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업종, 사업기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 서비스업인 경우가 납세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기간에서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기간이 높을수록 납세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납세태도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효율적 조세정책제도 개선과 세무대리인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로 납세태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고졸이하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법 및 세무지식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4천만원-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열째,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형태,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형태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법인사업자보다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 자산 규모에서는 20-50억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억 이하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율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일정 구간까지의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 그리고 경영자1인이 법인의 주식을 과점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 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잉여금 처분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세율로 인한 납부세율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당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로 인한 조세회피성향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와 회계의 투명성 의지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투명기업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기업관을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성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사회적 가치관 즉 사회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윤리경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국가경영과 재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제신뢰 적정성과 세제의 편의성 및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인식하는 세제에 대한 신뢰와 적정성 등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평하게 세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조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러한 태도가 성실한 납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수평적 수직적으로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여야만 조세회피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특성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도 높다는 결

과가 나타났는데 경영자 특성으로는 마케팅/영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높고, 위험감수성향이(높은 위험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더 선호, 과감한 행동의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과감한 대처, 남의 지도에 따라가기 보다는 직접 남을 지도하는 경우) 높은 경영자가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의 적정성과 공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세제 유형과 세제 측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세무비리와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조세에 대한 신뢰와 납세기준의 적정성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원관리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회사관련 특성에 따른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면 먼저, 일부의 전표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회피를 하는 행태가 가장 많으므로 매출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태도의 경우, 15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에서는 20-50억인 경우가 조세회피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중소기업군의 경영자들에 대한 세무자료 관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선진화와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납세의식 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함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의 중소기업 경영자로 제한하여 연구결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범위를 넓혀서 이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세회피의 규모나 실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면규, 『세법총론』, 조세통람사, 1996.
- 박상범, 『중소기업론』, 삼영사, 1993.
- 박주영, 이상호, 박경원, 『중소기업 경영론』, 학현사, 2009.
- 이우택·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8.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2.
- 황만순, 『창업실무』, 세경자료사, 1995.
-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 『히든챔피언』, 2008.
- 오마에 겐이치(Kenichi Ohmae), 『프로페셔널의 4가지 조건』, 2008.

논문

- 고성필, 「환경불확실성, 차별화전략, 분권화 및 최고경영자 특성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용대, 「조세 포탈법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 논점, 1992.
-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김익성, 「한국중소기업의 경영자특성과 경쟁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6.
-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남영호, 『企業家精神이란 무엇인가?』,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4.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
- 윤말순,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2.
- 이우윤,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영남 대학교 대학원, 1996.
- 이태로·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 : 조세회피의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85.
- 장군익, 「우리나라 中小企業 經營者의 리더십에 관한 研究」,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정종복, 「중소기업 CEO의 윤리경영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이 세제인지도, 납세태도 및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정환,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1996.
- 최임수,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2. 외국문헌

- Allingham, and Sandmo. A,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p. 328-338
- Clotefelter,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1983, pp. 363-373
- Drucker. P. 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arpercollins, 1985.
- Her schel, F. J., *Tax Evasion and its 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Public Finance, 33(3), 1978.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1998, 5th ed.
- Jackson, B. R. and Milliron. V. C.,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 Problems, and Prospects , *Journal of Aaccounting Literature*, 1986, pp. 125- 165.
- Jackson, and Jones. S,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5, pp.7-17
- Louis. Kaplow, "Horizontal Equity: Measures in Search of a Principle", *National Tax Journal*, 42-2, 1989, pp.139-154
- Long, and Swingen. J, "Tax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Federal Income Tax Complexity : Some Preliminary Findings", Working Papers, Center for Tax Studies, School of Management, Syracuse University, 1985.
- McCaleb, "Tax Evasion and Differential Taxation of Labor and Capital Income", *Public Finance*, Vol, 31, No.2, 1976, pp.287-294
- Milliron,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5, pp.794-816

- Madeo. and Madeo. L. A,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 1981, pp.457-465
- McBarnet, D., White Than White Collar Crime : Tax , Fraud Insurance and The Management of Strigma,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 Sep, 1991.
- Minor and HARRY. J,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A P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82, pp.190-203.
- Pinchot, G. Intrapreneuring: Why You Don't Have to Leave the Corpor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New York: Harper & Row, 1985.
- Procano,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84, pp. 619-636
- Plonick,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pp.283-288
- Schumpeter, Joseph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Song, and Yarbrough. Y. E,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Discrepa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8, 1978, pp.442-452.
- Song, Y. D. and Yabrough. T . E,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1978, pp. 442- 452.
- Sandmo, "Income Tax Evasiom, Lobour Supply, and the Equity-Efficiency Trade-off",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6, December 1981, 265-288
- Spicer, and Lundstedt. S, "Audit Probabilities and Tax Evasion Dec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 Psychology* 2. 1976, pp. 241-245.
- Strumpel, "*The Contribution of Survey Research to Public Finance*", in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Finance, A. T. Peacock(ed.) (New York Praeger), 1969, pp.13-38.
- Seligman, E.R.A., *The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ation*, in R. A. Musgrave and C. Shoup(ed),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Richard, D. Irwin, INC., Illinois, 1959.
- Tipke Lang, Steuerrecht, 13.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G, 1991.
- Uckmar, V., General Report, Cahier V. LX VIIIa(Tax Avoidance/Tax Evasion),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1983.
- Vogel,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4 December 1974, pp.499-513
- Witte, A. D. & Woodbury. D. F.,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 *National Tax Journal* 38, 1985, pp. 1- 13.
- Witte, and Woodbury. D, "*The Effect of Tax Laws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na, 1983.
- Yitzhaki,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201-202
- 草川十郎・田代茂, 調査・査察の税務, 日本税理士會連合會編集, Oct, 1985,

조세회피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경영자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에 관한연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써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조사 및 학술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통계자료로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오직 귀하가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대로만 답변에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10월

연구자 : 조 용 희 올림

연락처 : 011-9704-4079

E-mail : cyh1717@nate.com

I. 다음은 세제 인지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다음은 “세제의 공평성”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제는 비교적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소기업 세법구조가 비교적 형평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행조세법의 체계 하에서 우리 회사의 업종에 대한 세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세의 계산 근거와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세제의 편의성”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행 조세제도 및 세법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과세정보에 대한 교환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의 조세 납세에 대한 행정비용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현행 자동징수체계와 전자세무신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세무양식을 작성하기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세제 신뢰/적정성”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재의 세율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행 세율체계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세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정부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조세에 의한 정부의 재정수입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다음은 “세무조사 신뢰”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국세청의 조세 징수를 위한 전략은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적절히 밝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조세를 회피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일부의 전표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수선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매출단가를 낮게 계상 하여 납세 신고액을 줄임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총 거래액 중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제조원가(공무원가, 매입원가)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세무자료나 세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회계처리를 허위 조작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조세감면 혜택을 남용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공부채의 계산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납세태도”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납세는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납세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납세는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납세하지 않아도 나라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납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납세는 어떠한 명목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회계투명성 의지”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회사 내 회계기준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부감사인의 정신적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현대적 전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경영자 특성”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확실함보다는 높은 위험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더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과감한 행동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움츠리기보다는 과감히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의 지도에 따라가기 보다는 내가 남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 영역(연구개발, 마케팅 및 영업 등)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 귀하의 연령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귀하의 학력은?
(1) 고졸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졸 (4) 대학원 이상 (5) 기타
- 귀하는 우리나라 세법 및 세무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이다 (4) 잘 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 귀사의 업종은?
(1) 제조업 (2) 도.소매업 유통업 (3) 건설업 (4) 서비스업 (5) 음식업 (6)기타
- 귀사의 사업기간은?
(1) 3년 미만 (2) 3년-5년 미만 (3) 5년-10년 미만 (4) 미만

(5) 15년-30년 미만 (6) 30년 이상

7. 귀사의 총 자산 규모는?

(1) 10억 이하 (2) 10-20억 (3) 20-50억 (4) 50억-100억 (5) 100억 이상

8. 귀사의 종업원 규모는?

(1) 1-10인 (2) 11-50인 (3) 51-100인 (4) 101-200인 (5) 200인 이상

9. 귀사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1) 1억미만 (2) 1억원-3억원미만 (3) 3억원-5억원미만 (4) 5억원-10억원미만,
(5) 10억원-30억원미만 (6) 30억원-50억원미만 (7) 50억원 이상

10. 귀하의 소득수준은?

(1) 1천만원미만 (2) 1천만원-4천만원미만
(3) 4천만원-8천만원미만 (4) 8천만원이상

11. 귀사의 사업형태는?

(1)법인사업자 (비상장), (2)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Tax Evasions depending on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ttributes

Cho Yong-hee

Major in Digital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tax evasion and thereupon, explore the reasonable ways to prevent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tax evasions and thereby, suggest some qualitative reform measures for a sound tax payment environment and an effective tax syste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preceding studies and relevant literature as well as the data pu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reupon, set a theoretical ground and a research model. Then, the researcher set the hypotheses and therewith, tested them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in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tax eva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s;

First, since it was found that the more trustworthy the tax investigation was and the stronger the will for the transparent accounting was, the tax evasion was reduced, it is deemed necessary to enhance objectivity of the tax investigation, while check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socially and urging the consumers to be aware of importance of the transparent business transactions.

Second, since it was found that trustworthy and convenient tax system as well as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wareness of their tax obligation affected tax payments positively, it is assumed that if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should perceive that the tax system is trustworthy and fair, a sound tax payment culture would be created. Accordingly, in order to keep the tax system trustworthy and fair, it is essential to operate the tax system in a scientific way in terms of taxations and tax investigation and thereby, cover the loopholes for tax corruptions and evasions fundamentall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the tax base management programs and their PR conducive to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trust of the tax system and fair tax payment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tax payment and evasion depending on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ttributes, it is deemed necessary to reinforce the mechanism preventing the intentional sales omissions, because omission of the tax statements prevails as tax evasion.

Lastly, in order to urge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to pay their taxes faithfully and prevent their tax evasions, it is essential to advance the tax system and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tax administration system. To this end,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should be induced to be aware of their tax obligation. So, tax offices and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rs are obliged to make concerted efforts continuously to establish a sound tax culture.